

제9편 장기요양 기관운영

1. 장기요양기관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2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80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 3 조 (계약 기간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입소계약을 한 후 퇴소까지의 기간까지로 한다.
2.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4.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5.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본원과 이용대상자간에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표준이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호 의무를 충실히 실행하며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 노후의 삶을 질을 향상시킨다.
6. 노인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유효기간 및 등급변경 포함하여 재 계약을 실행한다.
7.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이용료와 같이 한다.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 비용 본인부담금내역 (2025년 01월 01일 시행)

단위:원

구분		내역(2025년 장기요양수가) 2.1:1		
등급		1등급	2등급	3~5등급
1일 수가		90,450	83,910	79,240
본인 부담	본인부담률(20%)	542,700	503,460	475,440
	본인부담률(12%)	325,620	302,080	285,260

비용	본인부담률(8%)		217,080	201,380	190,180
	비급여(100% 부담)		식대: 1일 9,800원*30일 = 294,000원 (간식비 포함)		
	소계	20%	836,700	797,460	769,440
		12%	619,620	596,080	579,260
		8%	511,080	495,380	484,18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음				

* 안나노인건강센터는 어르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인력기준(2025.01.01. 시행)에 따라 2.1대1로 변경하여 요양보호사를 증원하여 운영합니다.

제4조(계약서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시설이용신청서(시설소정양식)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4. 서비스이용대상자 진단서(병명이 기재된 것) 1부.
5. 서비스이용대상자 검진서(전염성 질환여부 - 결핵, 간염, 성병 등) 또는 의사소견서 1부.
6. 서비스이용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서비스이용대상자 주민등록등본 1부.
8. 서비스이용대상자 및 보호자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

제5조 (입소물품) 입소자는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시설장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6조 (면회 및 외출·외박)

- ① 입소자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입소자와 시설장 또는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 ② 입소자는 외출·외박시 사전에 시설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시설장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입소자나 보호자가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장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시설장에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 (식사 및 간식)

- ① 시설장은 1일 3식 및 간식을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 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② 시설장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입소자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요양실의 배정) 입소자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장이 조정할 수 있다.

< 2021.03.19. 신규추가개정 >

제9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권리의무**

제10조(신원인수인의 지정)

1. 시설은 이용자의 안전한 보호와 인계를 위해 이용신청인과 관계된 신원인수인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신원인수인은 시설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연대하고 이항에 책임을 짐과 동시에 필요할 때는 서비스이용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 2021.03.01. 신규추가개정 >

제11조(신원인수인의 변경)

1. 시설은 서비스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강제집행과 파산선고 등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기타 시설이 요구하는 자격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때 서비스이용자에 대하여 새로운 신원인수인을 세우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전항에 규정하는 청구를 받았을 때는 조속히 시설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 인수인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 2021.03.01. 신규추가개정 >

제12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신원인수인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평등하고 성실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③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케어계획, 생활상의 일상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 ④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가 받게 되는 케어서비스, 프로그램, 시설내외 행사, 교육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또는 참가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 ⑤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이용자의 면회, 외출, 외박, 퇴소, 전원 등에 관한 권리가 있다.
 - ⑥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 ⑦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케어와 관련하여 알려진 사생활과 신체상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⑧ 신원인수인은 청구된 이용료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⑨ 신원인수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건강 및 케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 수집을 위한 상담에 응해야 한다.
 - ② 신원인수인은 이용료 등의 제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③ 신원인수인은 인적사항 변경, 법적인 권리변동 시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④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입원 등으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⑤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병원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이용 및 종결 절차, 비용정산 등의 필요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⑥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로 인해 발생한 시설 설비,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 ⑦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사망, 이용 및 종결, 외출 시 서비스이용자의 신원을 인수 인계 할 의무가 있다.

제13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 중단을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의 계약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해지한다.

- ①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는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는 3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시설이 정하는 퇴실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실신청서에 기재된 계약해지일에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 ②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는 전 호의 계약해제일까지 거실을 시설에 명도하여야 한다.
- ③ 퇴실신청서를 시설에 제출하지 않고 거실을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의 퇴거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고 10일째 계약 해제일로 한다.
- ④ 서비스이용자의 사망, 서비스이용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서비스 종료

2. 시설의 계약 변경 및 해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통보한다.

- ① 시설이용신청서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 ②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타 이용자에게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③ 서비스이용자의 건강 및 증세(노인성질환 경증)가 의료시설에서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시설의 촉탁의 및 간호사의 정기적인 건강체크를 기준)
- ④ 타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⑤ 입소자 및 보호자가 시설에 납부하는 비용 등을 4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 ⑥ 운영관리비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 능력이 없고 또한 이 지연이 계약에 있어서 시설과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 사이에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⑦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⑧ 건물, 대지, 부대시설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⑨ 장기간의 부재로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⑩.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2021.03.19. 추가개정 >

제14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급여를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시 비용 본인부담금 변경시 안내문 발송

제15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본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나,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일부분 대상자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1. 일반대상자 제34조 3항 내용과 같이 식사재료비와 간식비
2. 일2회 제공되는 간식의 개인 기호식품(우유, 요거트 등) 비용
3. 협력병원 촉탁의 내방진료의 외래진료에 따른 의료비
4. 개별욕구에 따른 외부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
5. 기타 개별욕구에 따른 물품구입 비용

제16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 기준 및 비용)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이를 제공한다.

2. 서비스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억제 및 이동 제한을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여 관리한다.

3. 서비스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서비스이용자, 시설의 타 이용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②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③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서비스이용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서비스이용자와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④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⑤ 함속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서비스이용자 및 시설의 타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보호자를 통해 권고할 수 있다. 단, 이실 할 경우 보호자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특별침실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 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에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특별침실이용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5. 시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정 급여대상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항목과 비급여 대상으로 별도로 정한 항목 외에 다른 비용을 수납할 수 없으나,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을 수납할 수 있다.

6. 전 항의 시설이 서비스이용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해 본인 또는 서비스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타비용은 각 호와 같다.

① 응급 및 의료적 조치에 따른 병원비 및 응급진료비 등

② 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적 필요에 의한 택시,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 외출 또는 병원방문을 위해 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

③ 기호품 등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전동칫솔, 개인용화장품, 향수, 건강기능식품 면도기 등) 구입비용

< 2021.03.01. 추가변경개정 >

제 17 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서비스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서비스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급여대상 본인 일부부담금 외에 해당하는 부분일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보호자 또는 가족과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보호자 또는 가족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서비스이용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서비스이용자의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 및 가족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보호자와 가족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와 가족이 병원에 도착하면 서비스이용자를 인계한 후 시설로 복귀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나 가족이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서비스이용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보호자나 가족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서비스이용자나 보호자가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 2021.03.01. 추가변경개정 >

제18조(서비스이용자의 임종 및 사망에 따른 처리)

① 서비스이용자의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무연고자의 경우 시설은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를 수행하며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③ 서비스이용자나 보호자가 시설 내에서 호스피스 케어를 원할 시에는 특별침실로 모셔 죽음을 앞 둔 이용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편안하게 죽음을 맞도록 돕는 호스피스 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시설장은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례절차는 시설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보호자가 별도의 장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모든 절차를 이전하고 해당업무담당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사망자의 사망원인이 시설종사자의 현저한 과실이나 고의적인 사실로 확인되어지면 시설장은 해당 종사자를 징계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

⑦ 장례장소는 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하되 협약 병원의 장례식장 등을 보호자에게 먼저 안내할 수 있다.

⑧ 장지 및 시신의 처리는 사망자의 유지 또는 보호자의 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을 원칙으로 한다.

⑨ 사망자의 유류금품은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노인복지법 제48조에 의거하여 처분한다. 단,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는 관련 법규에 따른 사망 절차를 행하고 유류금품 처분은 민법에 따른다. < 2021.03.01. 추가변경개정 >

제19조(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서비스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② 상한 음식물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서비스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③ 시설 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서비스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④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동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로 인하여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호자는 시설에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상태에서 사망하였을 때
- ② 서비스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부상 하였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③ 서비스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상하였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④ 서비스이용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부상하였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천재지변, 재난, 직접적인 부주의, 서비스이용자의 중대한 과실, 보호자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시설 내에 서비스이용자 간의 불화(다툼 등)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서비스 제공 중 시설 종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한다. 다만, 시설(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개인적 조치(서비스 제공 중)에 의해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서비스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시설장은 시설배상책임과 관련한 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2021.03.19. 추가변경개정 >

제20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원상회복)

① 서비스이용자는 시설물을 파손 또는 망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물의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단,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에서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개인정보 보호의무와 기록 및 공개)

① 시설장은 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시설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설장은 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으로 한다.

④ 서비스이용자는 시설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⑤ 시설장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⑥ 시설장은 제공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용자와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표준 양식에 의거

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조치)

①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시설장은 화재 및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서비스이용자별 구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은 직원의 근무 교대, 휴가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대행자 지정 및 업무 인수인계사항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 및 이용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감염예방관리활동)

시설장은 직원과 이용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감염예방 관리활동을 수행한다.

1. 간호에 필요한 비품의 소독 및 청결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2. 사용한 의료폐기물을 분리 배출하며 의료폐기물은 지정된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3. 감염예방 교육을 월(분기) 00회 이상 실시한다.

제24조(건강검진)

① 시설장은 직원의 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 실시 수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연 1회 건강검진 결과를 기관에 보고하고 질병이나 특이사항이 있을 시 2차 검진을 받아야 한다.

③ 시설장은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연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단, 건강검진시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이 규정의 변경은 시설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단, 법인이사회 회의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법인의 운영규정 개정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할 수 있다.

< 제 22,23,24,25,26조 2021.03.19. 추가변경개정 >

제26조 (퇴소절차) 퇴소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종결은 다음 항목 같이 보호자 상담을 통하여 결정하여 서비스를 종결한다.

① 사망으로 인한 서비스 종결

② 자진 또는 보호자 요청으로 인한 퇴소 및 서비스 종결

③ 강제퇴소(타인 또는 기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로 인한 서비스 종결

2. 입소자 및 보호자는 안나노인건강센터 퇴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센터에 제출한다.

3. 입소자 및 보호자는 입소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거한다.

4. 본 센터는 입소이용자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5. 본 센터 퇴소 시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15.04.01.>

제27조 (임종과 장례) 입소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 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행정복지센터에 사망신고를 한다. < 2021.03.19. 추가변경개정 >
< 2024.01.01. 일부수정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